

光州直轄市西區一般廢棄物管理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4年 7月

社 會 產 業 委 員 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4年 5月 25日

나. 提 出 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4年 5月 26日

라. 上程日字 [1994年 7月 4日 第33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臨時會)
1994年 7月 4日 3次 社會產業委員會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清掃課長 姜宇鉉〉

가. 提案理由

- 환경처예규 101(94. 2. 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
-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처분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나. 主要骨子

- 제20조 (의견진술의 기회의 부여)

"청문"을 "의견진술기회의부여"로 개정하였고 동조2항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과태료 처분 통지시 할 수 있도록 함

○ 제21조 (과태료 처분 통지등)

폐기물투기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 피처분자의 영업양도 상속, 합병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별표2)

다. 法的根據

○ 청소 67500-176(94.3.11)호로 광주직할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 환경처 예규 제101호(94. 2. 5)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

○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경미한 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통지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위반 행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그러나 폐기물 투기 위반 행위자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폐기물 투기 자체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너무 많은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 부과는 생각할 문제가 있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4. 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